

## 교회음악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

재정 2004. 3. 1.

개정 2024. 1. 15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(이하 ‘본 대학원’ 이라 한다)의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국가기관 및 교외 인사나 각 장학재단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사무관장)** 본교의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대학원장이 관장한다.

**제4조(장학위원회구성)**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 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위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.
2. 대학원 원장(이하 “원장“이라 한다)을 위원장으로 한다.

**제5조(장학금종류와자격)**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은 별표 1 과 같다.

**제6조(지급금액)** 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당해년도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

**제7조(수혜대상)** 장학금 수혜 대상은 교회음악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
2. 가정 형편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
3. 학생조교
4.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와 직계 자녀
5.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**제8조(추천)** 지도교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한다.

**제9조(추천의제한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.

1.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
2. 성적 불량자
3. 징계 처분을 받은 자
4. 기타 원장 혹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

제10조(장학생의 확정) 추천된 장학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.

제11조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지급시기) ①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학생조교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(장학금지급중지및환수)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.

1. 본 규정 제9조 제1호, 제3호, 제4호에 해당하는 자
2. 휴학자 (단, 입대휴학은 예외)
3. 제적 및 자퇴자
4.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

제15조(보칙) ①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승인하는바에 따른다.

② 본 세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본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본 세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본 세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본 세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① 본 세칙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 하되 성적향상장학금은 2012년 8월 1일

부터 적용한다.

2-14-2~3

제1조(시행일) ① 본 개정 세칙(제8조, 제14조)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〈별표1〉)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개정 규정(〈별표1〉)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장학금의 종류

교내장학금

장학금명	수혜대상	지급금액	비고
입학실기 우수 장학금	입학실기시험 우수자	첫 학기 등록금의 25%	
성직자· 수도자 장학금	가톨릭 성직자 및 수도자	첫 학기 등록금의 25%	
성적우수 장학금	1. 석사과정 재학생 중 7학점 이상 혹은 세 과목 이상을 과 락 없이 이수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95%이상으로 총 재학생 중 전체 수석을 차지한 자	당해학기 등록금의 50%	
학업우수 장학금	1. 석사과정 재학생 중 7학점 이상 혹은 세 과목 이상을 과 락 없이 이수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92%이상인자 중 성적우수 장학금 비수혜자로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	당해학기 등록금의 25%	
학업장려 장학금	1. 가정형편이 어려운 석사과정 재학생 중 7학점 이상 혹은 세 과목 이상을 과락 없이 이수한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가 88%이상인자 중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(단, 대상은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시행함) 2. 성적우수 장학금과 성적향상장학금, 학업장려 장학금을 합한 장학금 수혜 학생의 배정인원은 해당학기 석사과정 재학생 총 수업료의 15%범위 내에서 배정하되, 배정인원 기준은 해당년도 장학금 배정 예산의 규모에 따라 위원 회에서 결정 한다.	당해학기 등록금의 25%	
교회음악 대학원장 장학금	학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교회음악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	일정액	
복지 장학금	1. 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/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	입학금 및 등록금액의 50% (수업연한에 한해 적용)	
학생조교 장학금	1. 본 대학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, 본 대학원에서 수업 및 업무지원(미사지원 포함)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 2. <삭제 2022.4.12.> 3. 학생조교는 지정된 기간에 교학팀에서 신청을 받아 대학 원장이 임명한다.	근로시간에 따름	